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1/ 19 통권 175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해외주식과 세금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스타트업 창업시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개념구분	적용범위, 계산방법, 기타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li> <li>· 창업기업 : 새로운 창업설립(해당 : 개인사업 외에 별도의 법인설립, 제외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존 사업의 양수·취득, 기존 운영사업의 폐업 후 재창업 등)</li> </ul>
청년창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자, 대표자</li> <li>② 창업 후 소득발생년부터 5년간</li> <li>③ 신규설립만 적용(업종 추가는 해당 안됨)</li> </ol>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 : 100%</li> <li>·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부 : 50%</li> <li>· 청년 이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 : 50%</li> <li>· 청년 이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부 : 0%</li> <li>· 과밀억제권역 외부 → 과밀억제권 내 이전 : 100% → 50%</li> </ul>
감면업종	제조·건설업 등,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단, 도·소매업, 면허증업은 제외됨)
과밀억제권	서울 모두, 인천 대부분, 남양주시, 서울위성도시(하남, 고양, 구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의정부)
공동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 손익분배비율 최대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함(손익분배비율 1:1이면 모두 청년이면 가능, 청년 아니면 제외)</li> <li>· 법인사업자 : 청년이면서 최대주주, 최대주주 다수면 모두 청년(청년이 단독대표면 적용, 공동대표가 청년 아니면 제외)</li> </ul>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2)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 인정요건
-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 해외주식과 세금
-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압표업자 세무조사 실시
-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조특법상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p.11)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4호 / 주간 47호

2025. 11. 1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스타트업 창업시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2)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 인정요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님들은무슨고민할까?)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 유효기간 만료된 쿠폰 매출 인식 관련하여 -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올해 일몰 도래하는 주요 조세특례 - 다주택자 중과 유예종료시 세금 변화	8 9
직장인 Survival	멀티태스킹의 함정과 단일 작업의 힘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사전법규법인-226, 2025.04.29) - 자진납부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37, 2025.04.08)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난 연말정산 항목 '주·자·고'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조특법상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11
세무정보	- 해외주식과 세금 -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 -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14 33 40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2

#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2)

##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 인정요건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1. 배경

개정된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동시에 회사 경영의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상법 하에서는 경영자에게 충실의무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에 따라,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해선 경영자가 형사처벌 등의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모두 "현실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주주 보호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법적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 2. 대법원 판례에서 경영판단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권한 범위 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때, 당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신의성실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행한 판단이면,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경영판단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을 것
2. 충분한 정보 수집과 조사 과정을 거칠 것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4. 결정 내용이 통상적인 이사의 선택 범위 안에 있을 것(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것)

## 5. 경영상 판단이 독립적이며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닐 것

이 요건들은 주로 대법원 2007다33333, 2007다35787 판결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다.

### 3. 경영판단 인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검토 절차

경영판단 인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검토 절차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 및 법률 해석에서 설명되고 있다.

- 이사는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정보수집의 범위는 경영상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업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한 무리한 과도한 조사나 비용 낭비는 요구되지 않는다.
- 중요한 재무자료, 시장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사항, 전문가 의견 등 경영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포함한다.
-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토와 분석, 토론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사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

경영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확보와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분석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는 법적·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사·이사회는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결정 과정 기록화(정보 출처, 검토 범위, 위험분석, 대안 비교, 이해상충 검토, 의결절차의 적법성)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위법 가능성, 이해상충 징후, 절차 하자, 자료 부족이 있으면 원칙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사전 법률검토와 사후 문서화가 핵심적 통제수단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Q** 퇴직한 직원 중 최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지난 재직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회사 납입분 및 환급금 이자)를 회사의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가 부담한 연금 및 환급금이자 입금된 경우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쿠폰 매출 인식 관련하여

**Q** 회사에서 발행한 쿠폰중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쿠폰을 매출로 인식시킬때 쿠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쿠폰 금액을 그대로 부가세 없이 전체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지요?

**A**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귀속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 등에 대한 수익인식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Q** 우리나라와 대만은 22년 1월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된 것으로 하는데, 대만 국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3일간 방문하여 강연을 하고, 본원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를 한다면 내국인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처럼 신고 하면 되는지?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전문직업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대상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국내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Q**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인보이스) 2. 직수출(필증) 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세금계산서발급분X)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필증), 용역매출(인보이스)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A**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일반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지만, 기업이 설립된 이후라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필요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한다. 신주는 현금발행, 청약에 의한 발행,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발행되는데 각각의 발행방법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 주식의 현금발행

주식의 액면 가액은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할뿐이지 주식의 시장가격이나 주주가 실제 불입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액면 가액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액면 가액을 초과하여 할증발행 할 수도 있고 액면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발행 할 수도 있다.

주식을 액면 가액으로 발행하게 되면 발행금액 전액을 자본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며, 액면 가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한 경우 액면 가액만큼은 자본금계정으로 반영하고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주식을 액면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 발행한 경우 액면가와 발행가와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 액면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 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50,000	대) 자본금	50,000
▶ 할증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를 600원으로 할증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6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할인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를 400원에 할인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4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		

## 현물출자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만 때때로 현금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물출자에 있어서는 출자 받은 자산이 현금이 아니므로 출자 받은 현물과 주식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회계 처리한다.

### ▶ 현물출자방법의 회계처리

차) 토지	6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이란 주식 청약시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미래에 일정시점까지 지불할 것을 서명날인하고 청약가격이 완전히 납입된 후에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청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식청약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청약증거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주식대금잔액을 받으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 주식청약일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	대) 신주청약증거금	100,000
-------	---------	------------	---------

### ▶ 잔금납입일의 회계처리

차) 현금	600,000	대) 자본금	500,000
신주청약증거금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란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증권인쇄비, 증권회사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신주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감액회계처리하면 되는데, 주식이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주식이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 ▶ 할증발행시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1,000	대) 현금	1,000
------------	-------	-------	-------

### ▶ 액면발행, 할인발행시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	대) 현금	1,0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올해 일몰 도래하는 주요 조세특례

내용	도입 연도	연장 횟수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1년	9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81년	9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986년	8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992년	9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7년	11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년	10번

### 화

####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

구분	과세방식	세율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지방세 1.4% 포함)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전환	누진세율 6.6~49.5%

\* 분리과세 구간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

\* 2000만원 초과분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함께 누진세율 적용

\* 예) 7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로 나머지 5000만원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최고세율 49.5% 적용 가능성 있음

#### 이소영 의원안

구분	과세방식	세율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초과	분리과세	22%
3억원 초과	분리과세	27.5%

\* 대상: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정



## 다주택자 중과 유예종료시 세금 변화

구분	일반양도	3주택 중과 (30% 중과)
양도가액	15억원	15억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5억원	5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억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3억원(15년/30%)	(공제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6억9750만원	9억9750만원
세율	6%~45%	36%~75%
양도소득세	2억5701만원	6억8226만원
총 세액 (10% 지방세 포함)	2억8271만원	7억5048만원

※ 서울 소재 3주택 소유자, 보유기간 15년 기준



## 시장에서 기대하는 증시 장기 투자 촉진 정책

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li> <li>• 주니어 ISA도입</li> </ul>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li> <li>• 공모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li> </ul>
장기보유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세율 우대</li> <li>• 증권거래세 감면 및 세율 우대</li> </ul>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확대</li> <li>• 디폴트 옵션 개편</li> </ul>



## 멀티태스킹의 함정과 단일 작업의 힘

현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은 업무 집중력과 성과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 생산성의 착각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잠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작업 전환이 반복되면서 주의력이 분산되고, 오히려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 인지적 피로 누적

업무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집중 대상을 바꾸면 뇌는 끊임없이 재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 단일 작업의 집중력 효과

반대로 한 번에 하나의 일에 몰입하면, ‘심층 집중(Deep Work)’ 상태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이때 뇌는 더 높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결과물의 질 또한 향상됩니다.

### 단일 작업을 위한 실천 팁

-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기
- 일정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는 ‘집중 블록’ 설정하기
- 알림이나 메시지 확인 시간을 따로 두어 주의 분산 최소화하기
- 업무 간 전환 시 짧은 휴식으로 리셋하기

멀티태스킹은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효율의 착각입니다.

단일 작업은 처음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더 높은 집중력과 완성도를 가져옵니다. 일의 양보다 ‘집중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인 일처리의 비결입니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조특법상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사전법규법인-226, 2025.04.29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4.10월 사업장(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함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짐

### 질의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비율의 판단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국조-238, 2025.05.20

### 질 의

- 신청법인은 국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보증요율은 무디스 모형을 따르는 국세청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왔는데,
  - 국외자회사의 신용도가 B2에서 B1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개선 전보다 산출 범위가 상승하게 됨

### 질의

무디스 모형의 적용이 세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

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37, 2025.04.08

### 질 의

- 질의인은 쟁점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후, 201X.12.31. 퇴사함
  - 쟁점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2X년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납된 급여 약 〇〇억 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사용
  - 쟁점법인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 처리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쟁점법인은 희망퇴직자인 질의인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위로금 〇〇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질의

- 자발적인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전법규소득-337, 2025.05.29

### 질 의

- 질의인은 '25.x.xx. 축산업/동물생산업(업종코드 : 012204)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하고
  - 종견을 사육하여 출산한 개를 경매장을 통해 애완동물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

-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고,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하여 발생하는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같은 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인이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난 연말정산 항목 '주·자·고'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세청·지자체 고액채납자 합동수색... 열흘 남짓에 명품 순금 18억 압류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채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채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채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채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채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기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압류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관세청, 'MID 오류' 잡고 대미 수출 AEO 기업 통관 혜택 강화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항이다"라면서 "MID 오류로 인해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신속 통관 혜택이 단 1건이라도 누락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 해외주식과 세금

- 국세청, 2025. 11

## I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 \*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소령 제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의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1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호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제3조제1항제14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i)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 (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 (iii) i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해외간접투자방식(FI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
- 적용요건
    -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원금 1인당 3천만원 이내일 것
  -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www.easylaw.go.kr](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법령 → 금융/금전 → 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shore Fund)
    -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역외펀드/ Offshore Fund)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 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별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취득·보유·처분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li> <li>-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li> </ul>
보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li> <li>-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li> </ul>

처분단계*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li> <li>- 「소득세법」제118조의2~4, 제118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단,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확인 필요)</li> </ul>
	간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li> <li>- 「소득세법」제118조의2~4, 제118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li> <li>-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납부</li> </ul>

\*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에서 각각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有

<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 >

서식명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li> </ul>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해당 &amp;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li> <li>    ① 지분율 10% 이상 &amp;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li> <li>    ②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amp;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li> </ul>
③ 손실거래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② 해당 &amp;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10억 원 이상 손실금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li> </ul>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나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li> </ul>



## II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사인증여 제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35조제2항)

###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45제1항)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령 제34조제1항)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 III 해외주식 보유 시 세금문제

###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 제17조제1항제5,6호)

소득 원천	소득 구분	근거규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5 소령§26의2②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했으나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 제127조제1항·제5항, 소법 제129조제4항)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상기 사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에 부가세(surtax) 등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3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 제14조제3항제6호)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 제57조)

## IV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 제94조)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소법 제105조제1항)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 분		국 가	
원천지국 과세 가능 (69 개국)	부동산 주식 <sup>1)</sup> (40개국)	부동산 50% 이상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sup>3)</sup> , 알바니아, 영국 <sup>4)</sup> ,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 <sup>5)</sup>
		부동산 50% 초과	가봉, 대만, 바레인, 브루나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sup>13)</sup> ,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조지아 <sup>3)</sup> , 체코(개정후), 캄보디아, 케냐, 키르기즈,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부동산 주식 과점주주 주식 <sup>2)</sup> (22개국)	부동산 50% 이상	독일, 멕시코 <sup>6)</sup> ,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 <sup>7)</sup> , 오스트리아 <sup>8)</sup> , 이스라엘 <sup>9)</sup> ,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파키스탄 <sup>8)</sup> , 프랑스
	부동산 50% 초과	베트남(개정후) <sup>17)</sup> , 싱가포르(개정후) <sup>15)</sup> , 아랍에미리트(개정후) <sup>16)</sup> , 인도(5%) <sup>14)</sup> , 캐나다 <sup>10)</sup> , 태국 <sup>11)</sup> , 파나마, 페루(20%), 르완다
	부동산주식 (75%) 비상장주식 (1개국)	카자흐스탄
	과점주주주식 (1개국)	이탈리아
	1년이하 보유주식 (1개국)	튀르키예
모든주식 (4개국)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호주(기타소득), 홍콩	
거주지국 과세(27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sup>2)</sup> ,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양도전 최근 5년 중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 3)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13조 6항)
-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채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채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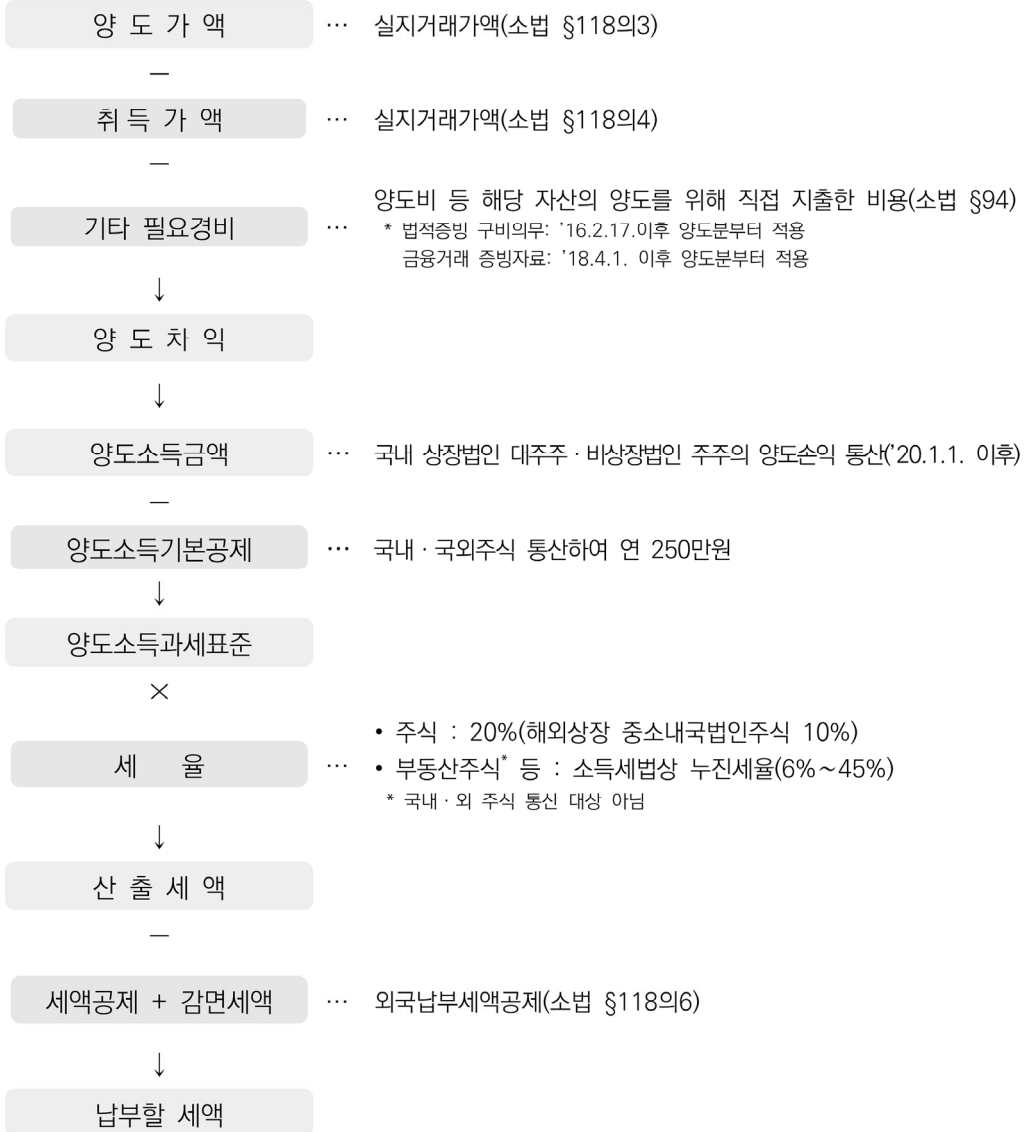


-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 13조 4항, 파키스탄 : 13조 5항)
  -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 가호)
  - 12) 말레이시아 :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
  -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 14) 인도(개정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 (전문개정 '16.9.12.발효)
  - 15) 싱가포르(개정후) : 공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제외
  - 16) 아랍에미리트(개정후) : 부동산주식의 경우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은 제외, 과점주주 주식 원천지국 과세시 소득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인 경우 국내 과세(제26조 혜택의 자격)
  - 17) 베트남(개정후) : '22. 1. 1. 이후 지급 분부터는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율이 최소 15%인 경우 원천지국 과세
    -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 조세조약 제17조) 이 경우,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였고(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01. 4. 16)), 이에 따라(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4항) 또는 「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

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재국조 46017-89, 2001.5.23.]

##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까?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19년 개정세법 내용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법 §94 등)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li> <li>② 비상장주식</li> </ul> </li> <li>○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li> </ul> </li> <li>□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 250만원</li> <li>○ 해외주식 : 25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li> </ul> </li> <li>□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li> </ul> </li> </ul>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확정신고 계산 사례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하는 경우

-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 이상시 안분)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일반법인)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 제162조제5항)
  - 다만,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i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율적용시기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5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정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차이항목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주식(지분)
보유단계	발생소득 종류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처분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08.1.1.부터)	적용없음
	적용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과세권 배분	대부분이 양국 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수증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6%~45% (누진세율)	기타자산 : 6%~45%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제한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  
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5%) 적용

○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 고·납부
보유단계*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 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처분단계*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94조~제118의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납부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  
처분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의무

## VI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세법상 과태료 정리

-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  
한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귀속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개 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건별 3백만원 (한도 5천만원)	건별 5백만원(한도 5천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18.12.31.신설 : 건별 5백만원(한도 5천만원)						
	해외부동산 명세서 <sup>3)</sup>	거주자별 취득가액 1%	물건별 취득가액 <sup>1)</sup> 1%	물건별 취득·운용·처분가액 10% <sup>2)</sup> (한도 1억원)					
		(한도 5천만원)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	'18.12.31.신설 : 미(거짓) 소명금액 20%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분부터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가 있으며, 처분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명세서 관련 과태료 산정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한 금액은 제외
- '22.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보유분도 제출의무有 (다만, 미(거짓)제출 과태료는 '23년 제출불이행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7일 (금)	11월 10일 (월)	11월 11일 (화)	11월 12일 (수)	11월 13일 (목)
미 달 러 (USD)	1445.60	1454.00	1453.70	1463.20	1466.40
일 본 엔 (JPY)	944.87	945.54	943.26	949.33	947.75
영 국 파 운 드 (GBP)	1898.80	1911.79	1915.54	1924.03	1925.53
캐 나 다 달 러 (CAD)	1024.01	1035.47	1036.84	1043.91	1046.64
홍 콩 달 러 (HKD)	185.91	186.96	187.00	188.27	188.70
위 안 화 (CNH)	202.87	204.45	204.19	205.53	206.16
유 로 화 (EUR)	1669.45	1679.15	1680.40	1694.75	1700.00
호 주 달 러 (AUD)	936.68	945.03	950.14	955.10	958.44
싱 가 폴 달 러 (SGD)	1108.29	1116.83	1115.91	1124.76	1126.5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45.59	348.18	349.45	353.52	354.50

관리번호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식등종목명	합계										
②	주식등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외주 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내 / 국외 구분											
④	주식등종류코드											
⑤	양도유형											
⑥	취득유형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⑧	양도일자											
⑨	주당양도가액											
⑩	양도가액 ( ⑦ × ⑨ )											
⑪	취득일자											
⑫	주당취득가액											
⑬	취득가액 ( ⑦ × ⑫ )											
⑭	필요경비											
양도소득 금액 ( ⑩ - ⑬ - ⑭ )	전체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⑮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⑯	감면소득금액											
⑰	감면종류	감면율										
⑱	과세이연신청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25. 11

## 1 세무조사 추진배경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500만 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

- 어느 날 게재된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대다수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티켓 물량 다수 보유’를 자랑하는 소수의 암표업자에게 가로막혀, 20만 원 수준의 입장권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야 현장에 닿을 수 있었으며,
  -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700만 원에 다다른 현실에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기본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 청장 취임 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총 17개 업자들이며,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조사대상자들의 암표팔이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 온라인 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
- ② 암표업자가 티켓 구매 희망자를 대신해 예약하는 대리 티켓팅(소위 ‘델티’)
- ③ 불법 예약을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
- ④ 예약 대기 없이 즉시 예약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직접 예약링크)를 판매

### 1 온라인 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

-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하고,
-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습니다.

### 2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 대리 티켓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며,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익 원 대의 국내·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 ③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 최근 티켓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렀으며,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 ④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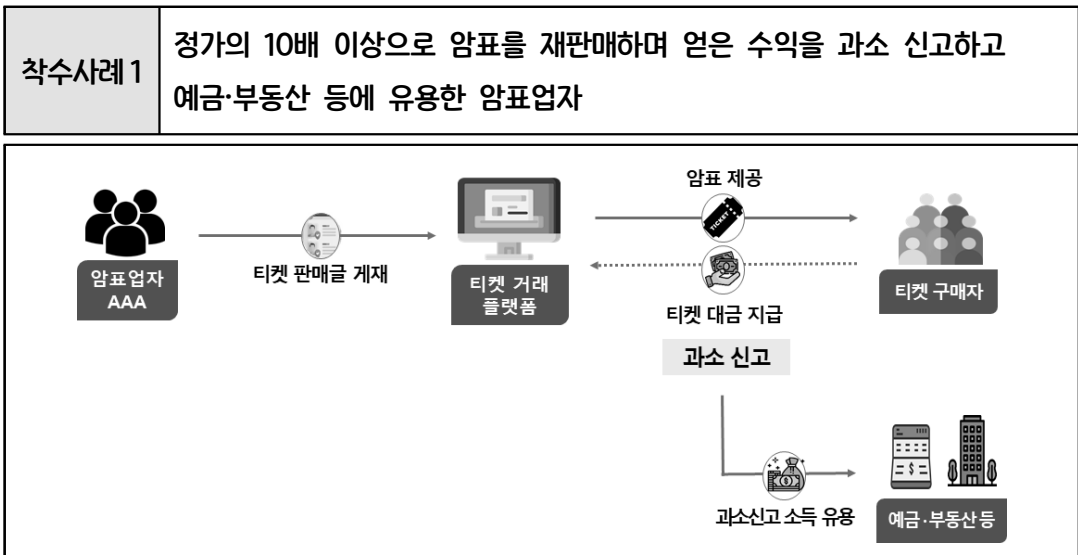
-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크)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습니다.
- 업자들은 직링크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하였습니다.

##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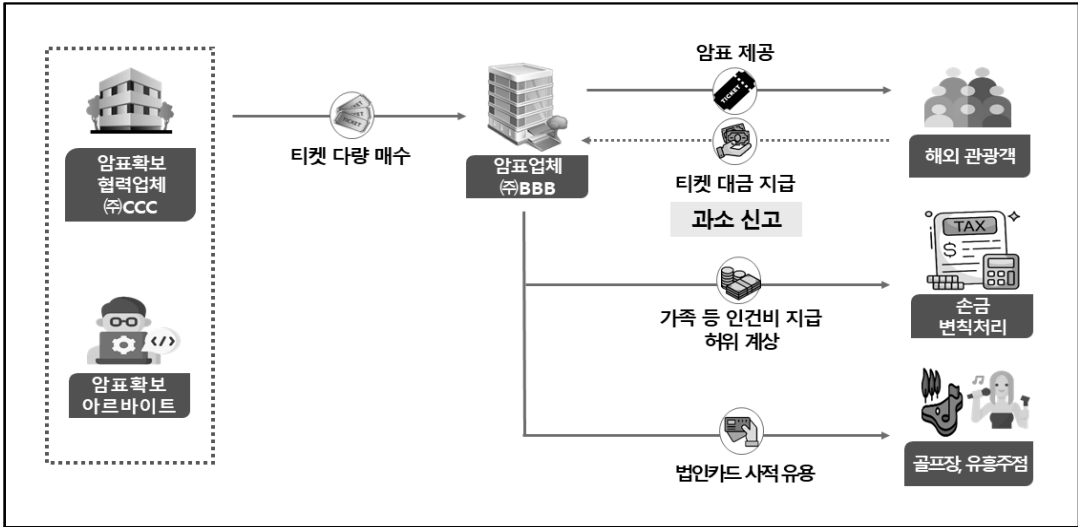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주요 착수사례



- 주요 탈루혐의
  -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로 활동
  -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해 왔으며,
    -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
  
- 조사방향
  - 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 추정

**착수사례 2** 공연 암표판매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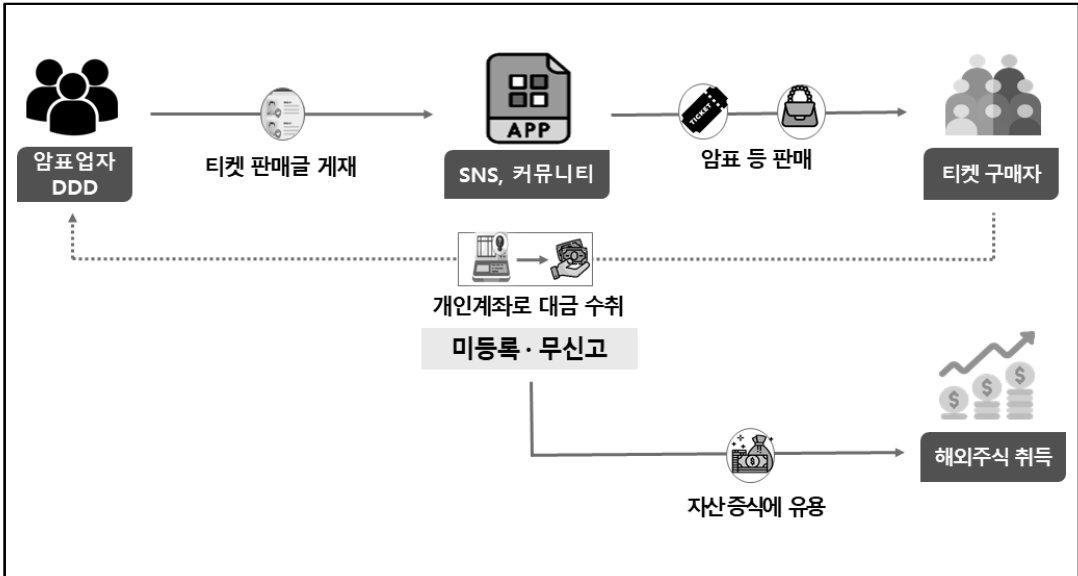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주)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로,
  -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주)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에,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하였으며,
  - 이를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하고, 특히 (주)BBB와 (주)CCC가 확보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문적인 암표사업을 영위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
- 또한, (주)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하며 경비를 부풀렸으며,
  -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

□ 조사방향

- (주)BBB의 정확한 수익 규모를 검증하여 과소 신고분을 추정하고, 가공 인건비 등 경비처리 적정성 여부 또한 중점 조사

**착수사례 3**    **암표 외 다양한 물품을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수익은 무신고 한 암표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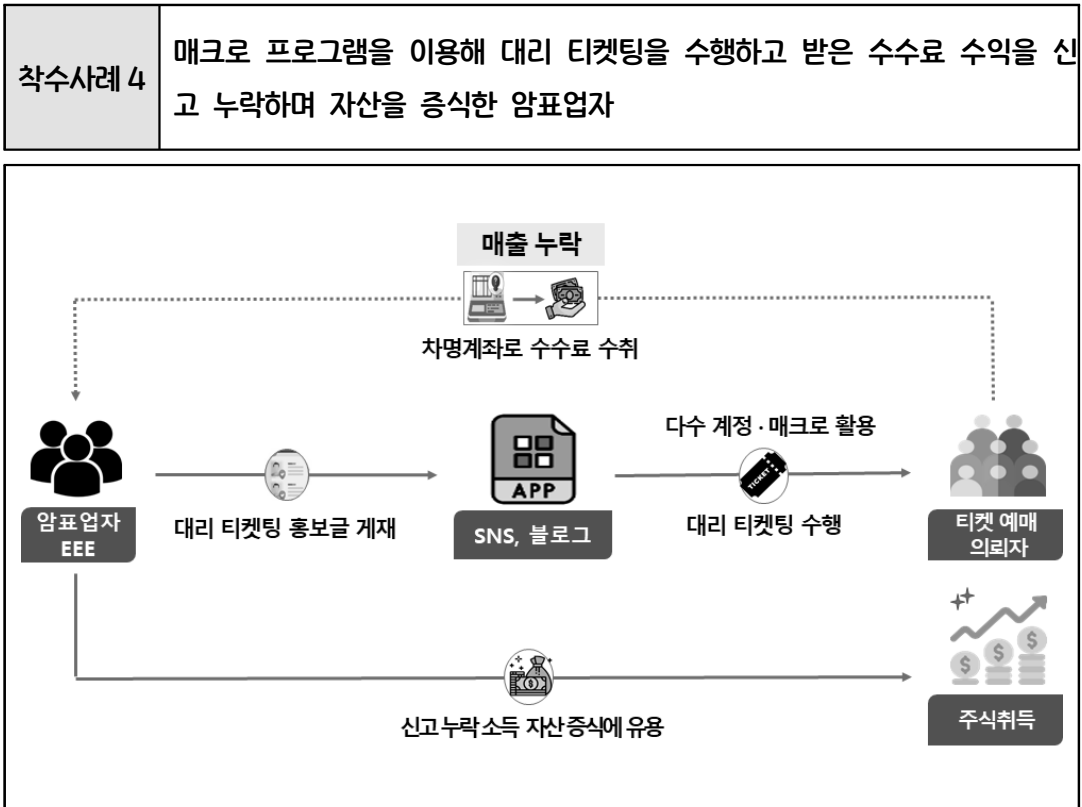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
  -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
  -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 원을 결제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5억 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 원 상당의 과다 지출이 누적된 상황

□ 조사방향

- DDD의 과다 지출에 대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소 신고분 추징



□ 주요 탈루혐의

-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 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로,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
  -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는 등 활발히 영업
-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

□ 조사방향

- EEE가 수취한 현금 직거래 수익의 신고 누락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고, 자금 흐름 및 추가 은닉재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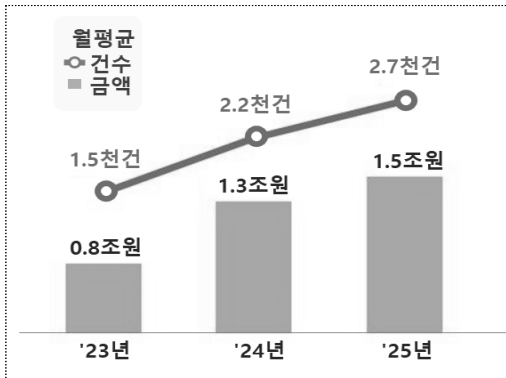
#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 국세청, 20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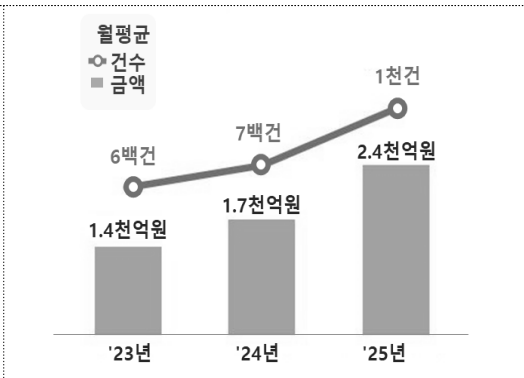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여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등 >



<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 >



\* 출처 :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가공

-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 2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정사례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정사례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 】

#### 1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 ▶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 ▶ [사례2]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 2 소득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 ▶ [사례3]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억원 추징
- ▶ [사례4]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원 추징



### 3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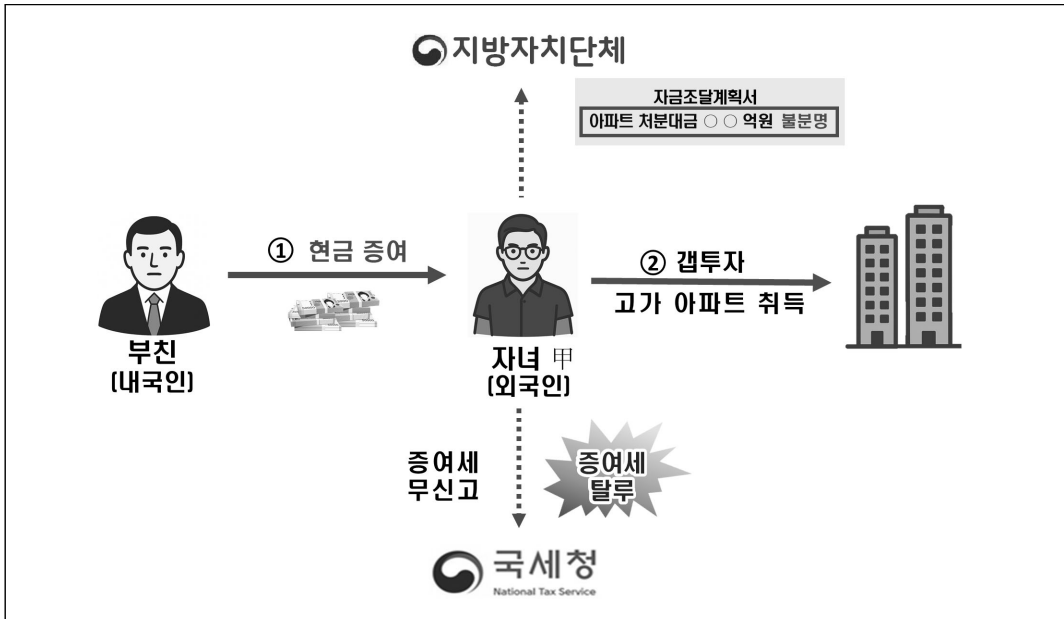
- ▶ [사례5]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체결(10.1.)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 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합니다.
  - 이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외국인]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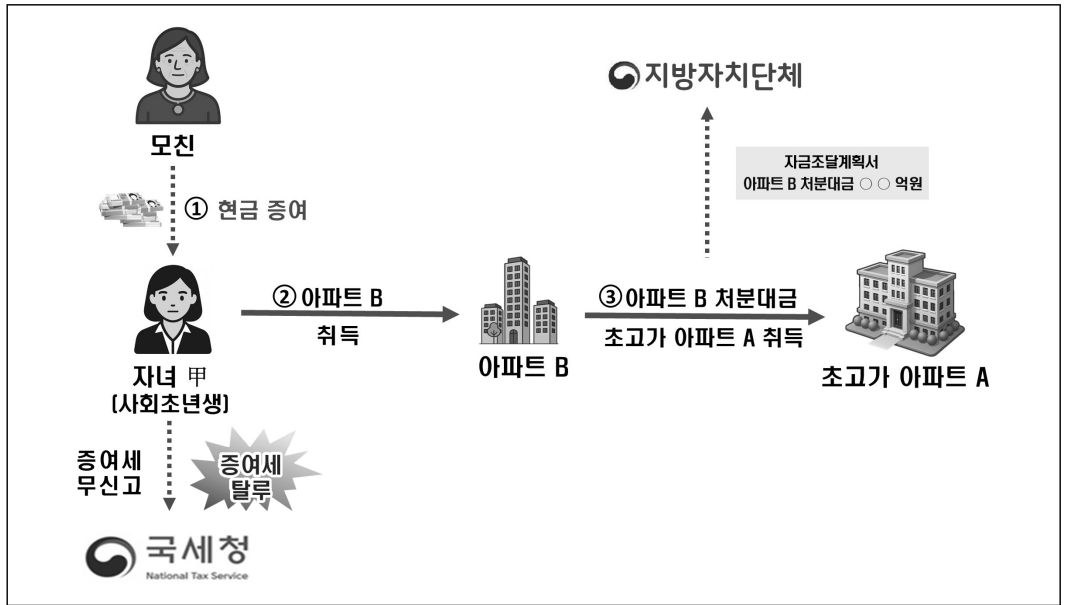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 은 무신고함

□ 조치사항

-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b>사례 2</b>	<b>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갓돈으로</b>
<b>[연소자]</b>	<b>초고가 아파트 취득</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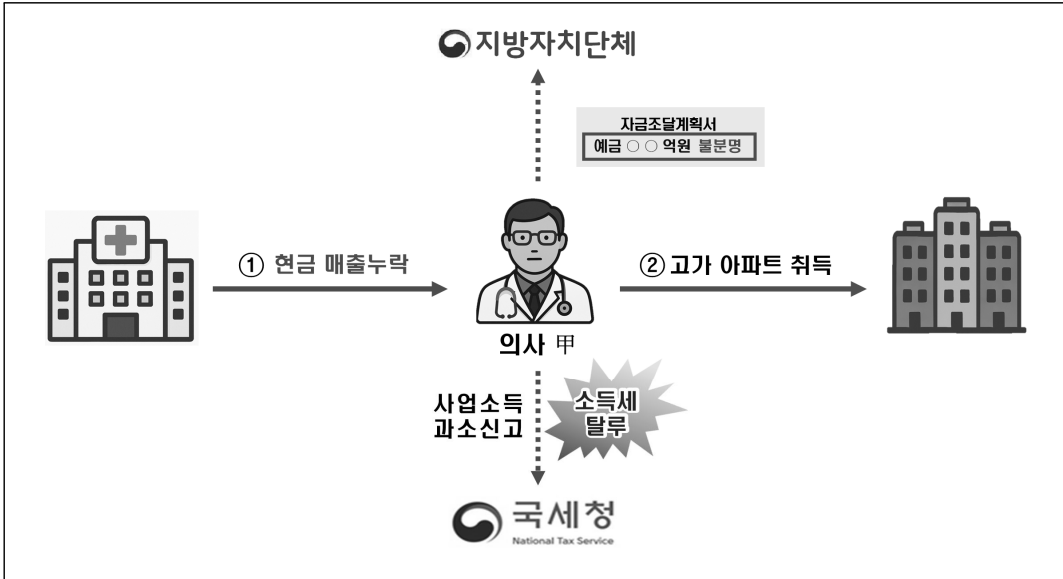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갑은 소득·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甲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매출누락]**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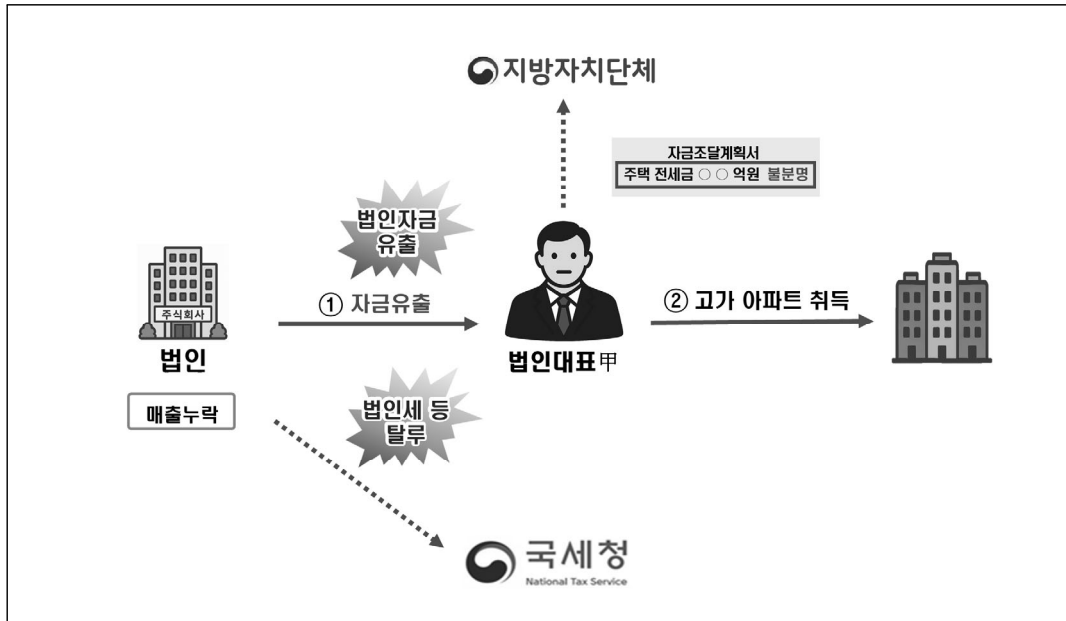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〇〇억 원에 취득하고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甲은 신고소득 및 재산취득내역 등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〇〇억 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〇〇억 원 추징

**사례 4**  
[법인자금]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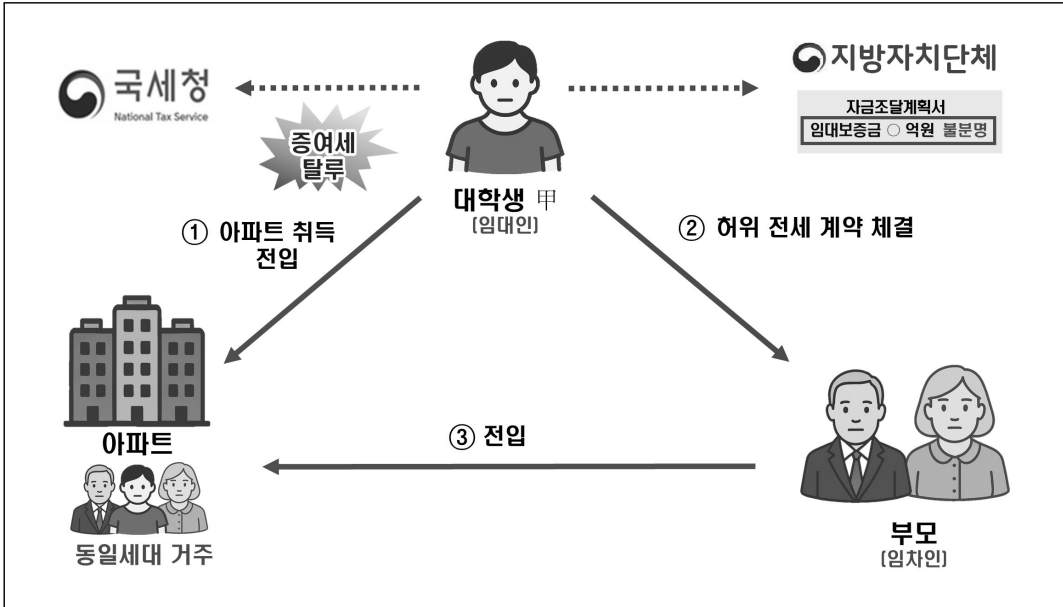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甲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기존 주택 전세금 ○○억 원과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甲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억 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

□ 조치사항

- 법인의 현금 매출누락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5**  
**[허위전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탈루**



□ 주요 조사내용

- 대학생 甲은 서울에 소재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〇〇억 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임대보증금 〇억 원은 부모가 세입자인 전세계약의 보증금이며, 甲은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함

□ 조치사항

-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〇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〇억 원 추징



## 참고 1.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주요내용

### □ 탈세제보 대상

-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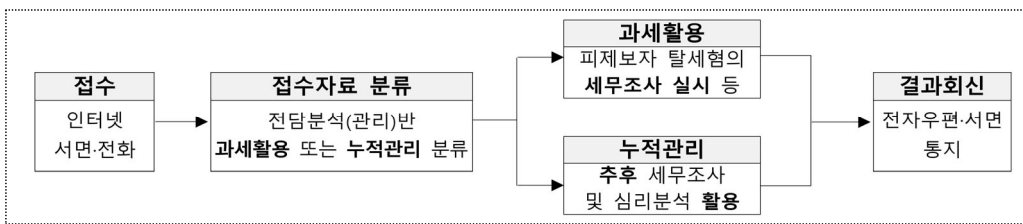
- ①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 ③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 □ 탈세제보 방법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

구분	접수 방법
· 인터넷	▶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또는 홈택스-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ARS)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④)
· 서면	▶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 □ 탈세제보 처리절차



### □ 탈세제보 포상금

-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 중요한 자료 >

-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